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14 선고 2022나45090(본소), 2022나45106(반소) 판결
[구상금 · 가불금반환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

담당변호사 정지홍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웁빈

담당변호사 강호균

변 론 종 결 2023. 5. 19.

판 결 선 고 2023. 7. 14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가단5102433(본소),
2021가단5295830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○ 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,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,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166,921,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1. 2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○ 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133,529,719원 및 이에 대한 2020. 11. 26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마성영, 판사 전지은, 판사 주철현